

2023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인턴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는 도내 관광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현장 교육을 통한 실무형 관광 인재 양성을 위해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의 참여 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6. 3.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 모집기간 : 2024. 6. 3.(월) ~ 2024. 6. 20.(목) 18:00까지

(서류 제출 후 전화 확인 必)

○ 사업대상(공고일 기준)

- 기업 :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을 영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2명 이상(대표자 제외)
- 인턴 : 관광 산업에 관심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청년, 경력단절 여성

구분	기준
청년	- 18세 이상 ~ 39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관광서비스과 재학생만 가능)
경력단절 여성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총 경력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경력 공백 6개월 이상인 자)

○ 모집규모 : 총 18명(기업별 상이)

○ 인턴기간 : 2024. 7. 1.(월) ~ 9. 30.(월) / 3개월

- 인턴기간 만료 후 기업별 현황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추진일정 ※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내용	일정
인턴 모집	선정 기업 대상 참여 인턴 모집	2024. 6. 3. ~ 6. 20.
	▼	
참여기업-인턴 연계①	센터→기업 인턴 지원서류 전달	2024. 6. 21.
	▼	
참여기업-인턴 연계②	기업↔인턴 면접	2024. 6. 21. ~ 6. 26.
	▼	
연계 결과	기업↔인턴 면접 결과 기업→센터 전달	2024. 6. 26.까지
	▼	
인턴 오리엔테이션*	근무시 유의사항 안내 및 역량강화 교육	2024. 6. 28.
	▼	
인턴 근무	근로계약 및 채용 증빙서류 제출	2024. 7. 1. ~
	▼	
현장 모니터링	근무 현황 점검(애로사항 청취) 및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 확인	2024. 8. ~ 11.
	▼	
정규직 근무	해당시에만	2024. 10. ~
	▼	
만족도 평가	참여 기업, 인턴 사업 참여 만족도 평가	2024. 10. ~ 12.

2 인턴 오리엔테이션

- 일 시 : 2024. 6. 28.(금) 14:00 ~ 18:00
- 장 소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 대 상 : 기업과 연계된 인턴
- 내 용 : 근무 시 유의사항 안내 및 기본적인 문서 작성법(주요 단축키 등),
1페이지 보고서 작성법 등 근무 시 필요한 기본 교육 진행

3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1일 7시간 이상, 총 35시간 이상 근무)
 -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세부 근무조건은 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월~금요일 09:00~17:00 또는 09:00~18:00을 기준으로 하나, 근로시간 조정은 사업 센터, 기업, 인턴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
- 임금 지급
 - 최저 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급여일은 각 기업에서 지정하는 날 인턴 개인 통장으로 지급
 - 인건비 지급의 기준은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만근이 아닐 경우는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업무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인턴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 금지
 - 제공 일자리의 직무 내용이 해당 지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일자리 금지 (예) 음식, 음료 등 제조 및 판매, 물품 판매, 청소, 방문객 응대, 주차 안내 등 관광분야와 관련 없는 일자리
- 인턴 운영계획서에 제출했던 근무지에서 변동 금지(파견 등 금지)
- 근무 인턴이 실무형 관광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근무지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인턴 담당자(멘토) 지정 등
- 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 엄금
 - 단, 기업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기업과 인턴의 협의에 의해 가능하며 초과근무 수당은 기업에서 지급함
-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 ※ 사업장 근로자 인원과 관계없이 1일 유급 휴가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유의사항

- 해당 인턴이 근무 예정인 사업장에 과거 4대 사회보험 이력이 있는 경우거나 그 외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불가
- 해당 인턴과 근무 예정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본 사업을 통해 해당 기업에 재직하다 퇴사한 인턴으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분쟁의 책임은 해당 기업 및 인턴에 있음
- 현황에 따라 연계가 불가할 수 있음

5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접수(yjh16@jbct.or.kr) / 전화 확인 必
 - 최대 2개 기업 지원 가능
- 제출 서류
 - ※ [붙임2]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안에 첨부
 - [서식1] 참여 신청서(이력서)
 - [서식2] 자기소개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4]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지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서식5] 경력단절 여성 증명 서류(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_해당시에만

6 참여 혜택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 및 취업 컨설팅 우선 선발

7 기타 문의사항

- 문의처 :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063-230-4216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완 요청 및 추가 요청 가능

- 붙임 1.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목록 1부.
2. 2024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인턴) 1부. 끝.